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2010년 8월 18일

교육법 연구팀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발표: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목 차

I.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1
II. 논의의 전제	2
1. 학생의 법적 지위	2
2. 정부 정책의 추진 동향	5
3. 조례 제정의 한계	6
가. 관계 법령	6
나. 판례	6
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7
III. 학생 권리의 검토	9
1. 학교폭력과 체벌의 금지	9
가. 주요 쟁점 사항	9
나. 학교폭력 관계 법령	9
다. 학생 체벌 관련 법령	11
라. 학생 체벌에 관한 판례	13
마. 학생 체벌 금지의 법적 과제	16
2. 사생활의 자유	17
가. 주요 쟁점 사항	17
나. 관련 법령	17
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판례	18
라.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20
3.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22
가. 주요 쟁점 사항	22
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령	23
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24
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26
IV. 현안 정책과제 및 법령 개정방안	27
1. 현안 정책 과제	27
2. 기본 방향	28
3. 법령 개정방안	30
4. 학생 권리 신장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과제	35
5. 관련 법령 개정안 대비표	36

I.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학교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

- 단순한 교육의 대상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학습자를 이해하는 「교육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체벌,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반응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민주적인 생활공간이자 안전한 학교를 지향한 학교생활문화 창조

-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타인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책임의 주체임을 인식해나가도록 함.
-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학교 규정의 합리적인 정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통해 자주적인 수범 의식을 제고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민주시민 정신의 함양을 꾀함.
-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와 균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계 정립

- 제5기 지방교육자치가 시작하고 분권화와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면서 교육관계 법령과 조례의 관계나 조례에서 다룰 사항의 기준과 조례 제정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II. 논의의 전제

1. 학생의 법적 지위

- 공교육의 법리에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법과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중핵적인 권리임.
- 학생에 대한 1차적 권리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진 부모에게 있으며(domestic rights), 교원은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신탁, 실정법상으로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한 권리임.
-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인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입장(parens patriae)에서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여(부모대위권-in loco parentis) 교육과 복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권리(police power)를 가짐.
-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은 학생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법적 측면에서는 ‘특별권력관계’이론으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교육지도목적에 위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음.
- “교사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 있다.”는 관습도 쇠퇴하여 가고 있으며, 특별권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은 보장되며 그 제한에는 헌법이나 개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단순한 교육의 객체가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보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음.

[참고]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헌법재판소 2000.04.27, 98헌가16, 판례집 제12권 1집, 456)

-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련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을 당구장 출입 금지시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심판한 반면(헌법재판소 1993.05.13. 92헌마8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의 위헌확인 심판에서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정도를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심판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요구도 인정하였음(헌법재판소 1996.02.29. 94헌마13).
-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연령 및 재학 상황을 기준으로 청소년층을 유치원생, 초중고생, 대학생으로 3분하여 헌법적 지위를 달리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시설제한에 관하여 대학생은 변별력 있는 성인으로 영향이 없고, 유치원생은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당구장 시설 제한이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헌법재판소 1997.03.27. 94헌마196).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나, 기본권행사시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의 객체’면도 기본권보장과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나 기본권 행사시 미성숙에 기인한 보호의 필요성과 학교의 특수성, 예컨대 수업방해의 예방, 교내질서유지 등 때문에 제한

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음.

[참고]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총회('89)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18세 미만)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전문, 총 54개 조항)

- '90년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1년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에 적용
- 협약 가입 당사국은 협약상에 있는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입법, 행정, 사법 등)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

제13조(표현의 자유)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7조(체벌 관련)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정부 정책의 추진 동향

- 두발 및 교복 착용 여부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시행(85)-두발자유화를 조례로 확일적으로 규정 시 학교장의 학교규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2003년부터 학생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
- 2006년에는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두발, 체벌)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07년에는 사·도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시 준수사항으로 학생의 인권·자율·성·책임·자치활동 보장 및 인성교육 강화를 제시
 -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대책 수립(07.3), 32개 학생인권정책연구학교 운영(07)
- 2008년에는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린마 일리지(상벌점제)디지털시스템」 추진
 - ※ 전제 : 교육공동체 합의하에 학생생활규정 정비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국정과제 '09년 추진계획 :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
- 법무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06년부터/10, 49개교) 운영

3. 조례 제정의 한계

가. 관계 법령

-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나. 판례

- **법령의 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임(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 **권리 제한에 대한 법령의 위임**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법령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정한 것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 **기관 위임 사무** :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 **법령 위반 판단 기준**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지역 실정 반영** :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닌 경우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해석

1) 법령 위반으로 보는 관점

- 조례로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교원의 학생 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함.

- 학생인권조례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칙은 무효가 될 것임.
-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체수단이 없어지는 경우, 대체수단의 확보가 매우 곤란한 경우, 대체수단의 확보를 위한 부담이 매우 큰 경우, 인권조례로 인해 학교가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2)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 관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고,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장학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및 학습자의 인권 보호를 주요 정신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거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은 법령의 취지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생의 인권 보장 자체가 학교장이나 교원

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학생 체벌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인 금지가 법의 정신임을 밝히고 제한적으로 체벌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므로 체벌의 전면 금지가 법의 취지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음.

Ⅲ. 학생 권리의 검토

1. 학교폭력과 체벌의 금지

가. 주요 쟁점 사항

-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교육의 전제이자 최근 학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예방,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잘 정비된 상태임.
- 반면, 체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법령에서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함.
- 체벌과 관련하여 체벌의 개념, 기준, 범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 금지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벌에 대한 입법적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부각됨.

나. 학교폭력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

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학대를 규정 대상으로 함.
- 「학교폭력예방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경기도조례안보다도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제1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행위’로 제한하여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에 의한 학교폭력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 및 성인에 의한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미성년자로서 학생에 의한 행위는 배제됨.
- 「여성발전기본법」은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희롱을 규정하여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라목)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표 1〉 폭력행위에 대한 주체와 규정 대상 비교

구분	행위주체	규정 대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	학교폭력: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보호자, 성인	아동학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직원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경기도 교육조례안	제한 없음	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 폭력 행위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 개정, 2011년 1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음.
- 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련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폭력행위 예방교육

법령	예방교육 내용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 제1항 : 학생대상 - 제2항 : 교직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1항 : 교원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성매매 예방교육

다. 학생 체벌 관련 법령

- 학생 체벌은 「형법」 상해(제257), 폭행(제260조), 업무상과실치사상(제26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상해에 이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음(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함).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자는 체벌이 아닌 다른 지도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라. 학생 체벌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88.1.12. 87다카2240

- 체벌의 정당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 후순위 수단으로 사용 여부, 적정 방법과 정도, 주의 의무를 들고 있으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음.

○ 대법원 2004.6.10. 2001도5380

-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을 때리고, 질문하는 학생에게 “짜가지 없는 년”이란 욕설을 한 혐의로 폭행죄와 모욕죄가 적용되어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됨.
-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의 정신을 받아들여 학생 징계 및 지도에 관한 전환점을 마련한 판례로 기존 판례의 기준을 따르면서도 엄격하게 기준을 해석·적용함.
-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협한 물건 또는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성별·연령·개인적 사정 등에 따른 모욕감 주는 행위 등은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파악함.

○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1189

- 수업에 25분 늦게 들어간 학생의 뺨을 때렸고 학생은 욕설을 하며 교실을 나간 사례로 교사는 폭행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는 것으로 봄.
-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봄.

- 체별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것임.
- 반대의견(3인의 재판관) : 훈계 수단으로 체벌은 허용되며 체벌의 교육적 기준 준수 여부와 형사처벌 판단은 별개이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보다 학생 잘못의 훈육이 더 가치 있음.

[참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04.6.10)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협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

○ 체벌의 기준(헌법재판소, '06.7.27)

-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미국연방대법원 *Ingraham v. Wright*, 430 U.S. 651(1977)

- 학생체벌이 헌법상 권리의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는데, 심한 체벌이 자의적인 행위로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주 법에 따른 구제 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함.

[참고] 미국 주 법의 입법 사례

Minnesota: MINNESOTA STATUTES 1966. Chap. 127.45

제1조(정의) 이 조에서 체벌이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s section, 'corporal

1. 도구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사람을 때리는 행위

2.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불합리한 물리력의 행사

제2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구 종사자는 비행을 교정하거나 비행에 대한 벌로서 체벌을 가하거나 가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Tennessee: TENN. CODE ANN. Sec. 49-6-4103

교원은 학교의 규율과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주 법이나 교육구 방침으로 체벌을 금지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이 따를 수도 있음.

○ 일본의 사례

- 문부과학성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기립, 무릎 꿇고 앉히기, 점심 굶기기 등 체벌 금지함.

- 문부과학성은 이지메(집단 괴롭힘)와 교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 써, “신체에 대한 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공표(2007. 02)
-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에 관한 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하에 체벌금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완화(즉, 다음사항은 허용)하기로 함(2007. 02)
 -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 숙제와 청소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 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마. 학생 체벌 금지의 법적 과제

- 학생 체벌과 학생 징계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금지할 경우 학생 징계가 늘어날 수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선도 위주의 학생 규율의 철학을 반영하여 과거 ‘정학’ 처분을 징계의 종류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을 포함시켰으며 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징계나 체벌 이외에 지도 방법으로서 교육활동 참여 제한(타임아웃제), 방과 후 남기기, 수행평가 점수 감점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명료히 하고, 학습권 침해의 문제, 지도수단과 문제행동의 합리적 관련성, 적법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 대체 지도 수단의 입법례(Indiana 주 교육구인 MCCSC의 방침)

- 교장실 회부, 학부모 상담, 휴식시간 축소, 점심시간 근신, 방과후 근신, 교육활동 참여 제한, 조정 등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화를 반영하여 차별이 불가피하게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차별의 기준을 법령에서 좀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생활의 자유

가. 주요 쟁점 사항

- 두발과 관련한 강제이발, 지나치게 엄격한 용의·복장 규정 등에 대한 학생의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교육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
- 휴대폰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 소지 및 관리의 자유와 관련한 타당한 기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음.

나. 관련 법령

-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에는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혹은 인격적 자율권이 포함되므로 용의·복장이나 휴대폰 소지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됨.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는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 05진차204·145·119
 - 두발의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됨.
 - 강제이발은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

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은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움.

- 미국에서 두발과 관련한 논란은 1970년 대 전후에 크게 대두되어 소송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연방고등법원 중 제1, 제4, 제7, 제8 고등법원은 두발규제가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제3, 제5, 제6, 제9, 제10 연방고등법원은 두발 규제가 헌법상 권리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없는 상태임.
- 미국 연방고등법원 *Breen v. Kahn*, 419 F.2d 1034(1969)
 - 남학생의 머리는 뒷부분이 목 칼라 선을, 옆 부분이 귀를, 앞부분이 눈썹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 이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고 연방고등법원은 개인의 머리 스타일 및 길이의 결정은 연방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 자유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수업의 방해 내지 소란행위,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같은 정당화 입증책임을 학교에 부여함.
- 미국 연방고등법원 *Karr v. Schmidt*, 460 F.2d 609(1972)
 - 남학생의 머리는 눈 위로 흘러내리거나 옷 깃 아래로 내려올 정도로 길어서는 안 되며 말총처럼 묶는 것 등을 규제함.
 - 이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연방고등법원은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 연방헌법상의 권리로 보지 않았고 최소한의 합리성 요건의 충족으로 학교의 규제를 인정함.
- 미국 연방지방법원 *Bishop v. Cermenaro*, 355 F.Supp. 1269(1973)
 - 전문계 고등학교 사례로 양쪽 머리는 귀밑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짐.
 - 법원은 두발규정이 현명하고 좋은 규정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연방헌법

에 합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함.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두발규정은 정당한 규제 근거가 됨.

○ 미국 연방대법원 *New Jersey v. T.L.O.* 469 U.S. 325(1985)

- 실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고 흡연 사실을 물었으나 부인하자 지갑을 수색하였고 마리화나와 관련될 수 있는 종이 발견되자 더 자세히 수색하여 약간의 마리화나와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됨.
-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교육환경 보호는 서로 균형 있게 존중되어야 함.
- 학교에서 수색은 상당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가능하며, 그 한계는 연령·성별, 수색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함.

○ 미국 주 법원 *Price v.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 New York, April 22, 2008

- 학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학부모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함.
- 휴대폰 규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주장하는 어느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휴대폰 규제 규정은 보호자나 학생이 학교 전과 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음.
-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충분함.

라.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 두발 등의 규제는 미성숙한 학생을 보호하고 공동체 가치 규범을 가르치는 학교의 사명에 비추어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고, 학생이 유행에 민감하고 퇴폐적 상업주의에 빠져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쉬우므

로 두발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나 예측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관점도 있음.

- 예외 없이 소지품 일괄검사의 금지는 교외 소풍, 교외체험학습,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일괄검사까지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안전 보호 책임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될 수도 있음.
- 사생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학습자의 자기결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용의·복장에 대한 무조건적 자유는 학교별 특성 및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학교별 사생활 자유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참고] 헌법재판소는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의 지배는 교육의 본질과 이 상에서 멀고 오히려 학부모인 주민 등의 참여에 의한 자치적 교육 운영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함(헌재 2005.12.22, 2004헌라3, 판례 집 제17권 2집, 658).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조례에서는 기본권 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불합리한 학교규칙의 심사 및 개정 권고를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다음 10가지를 의무적인 학칙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학생의 용의·복장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학칙개정절차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제정·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가. 주요 쟁점 사항

- 학생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운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데 국내 판례는 거의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보장 범위나 제한 기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임.
-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관점과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다른 학생의 교육권 보호, 학교의 질서 유지 및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됨.

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령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4항에 따라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학생의 용의·복장이 의사표현의 수단인 경우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21조 제4항에서 의사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이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함.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5조는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8.9.25. 07진인4150

- 학생의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집회시 학교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의 요구와 의견이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교사의 권위 등에 의해 학생은 일정한 행동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 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

○ 미국 연방대법원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1969)

-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검은 완장을 차기로 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 처분을 내림.
- 학생은 학교문을 들어서서 순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님.
- 막연한 혼란의 우려나 염려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불충분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학생은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폐쇄회로가 아니며 교실은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가 되어야 함.

- 미국 연방대법원 Bethel Sch. Dist. No.403 v. Fraser, 478 U.S. 675(1986)
 - 학생회 출마 후보지지 연설을 하면서 성적 비유가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징계를 받음.
 - 학교는 음란하고 무례하며 저속한 언행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484 U.S. 260(1988)
 - 저널리즘 과목 활동 일환으로 학교신문을 제작하는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에서 임신 학생의 이야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이야기 등을 발견하고 해당 면을 삭제한 채 학교장이 발간하여 학생이 소송을 제기함.
 - 학교의 후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학교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문법이 맞지 않거나 음란·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편견에 치우친 경우 등을 지도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교육이나 그 밖의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1972년 3월 30일 데모에 참가한 학생 퇴학처분사건에 대한 일본 동경지방법재판소 판결
 -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님.
 - 유인물의 배포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장 또는 학생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이나 공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고등학교가 정치적인 집회나 데모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심신이 미성숙해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고등학생이 특정 정치적 사상에만 깊게 빠지는 폐해를 방지해 기초적인 교양을 습득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

라 자칫하면 이러한 집회 데모가 폭도화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상의 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이것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이나 공적인 질서에 반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1972. 5. 12 삼리총투쟁 참가학생 정학·퇴학처분사건에 대한 일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판결

- 고등학생에게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또는 학교질서의 유지라는 면으로부터 제약이 있는 점은 어쩔 수가 없음.
- 이 사건에 대한 1979년 항소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학생이 정치 활동을 이유로 결석한 경우, 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함.

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적 과제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취지에 맞추어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취지를 적절히 고려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정비되어야 함.
- 학교의 교지 등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의 일부로 행해지는 언론의 경우 학교의 교육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경우 해당 언론으로 인해 학교는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어려워지므로 합리적인 제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IV. 현안 정책과제 및 법령 개정방안

1. 현안 정책 과제

1) 체벌의 전면 금지 여부

-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징계나 다른 대안 지도 수단을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징계나 다른 지도 수단과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
- 체벌을 전면 금지 또는 엄격하게 더 제한할 경우 학생 지도 수단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

2) 학생 기본권의 보장

- 학생을 인격 주체로 다루는데 필수불가결로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 학생의 권리 남용에 관한 제한이나 권리 행사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3) 학생 징계·지도와 적법절차

- 학생 징계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부터 징계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는 방법의 문제
- 학생징계 및 지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학생의 이익과 학교의 부담을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

4) 민주적인 책임 의식의 확보

- 체벌 등 교원의 학생지도 수단은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만 보장할 때, 법 준수 의식이 약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풍토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학교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
- 학생의 참여를 어떻게 확보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낼 것인지의 문제
- 가정과 학교의 협력과 조화를 기본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의 책임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의 문제

2. 기본 방향

1) 학생 체벌

- 학생 체벌은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으므로 가급적 금지 방향으로 나감.
- 학생 체벌보다는 대안 지도 수단을 제도화하고 대안 지도 수단 중에서도 학생의 불이익이 적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효과를 가진 수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참고] 체벌의 금지시에도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한 행위 등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함.

2)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학생에게 보장됨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선언하고, 세부적인 구현 방법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규정을 개편하여 세부적인 구현지침을 만들고 이를 교육하도록 함.

3) 징계와 적법절차 보완

- 학생 징계시 공정성의 확보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 요건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함.

4) 권리의 보장과 책임, 의무 교육-학생의 권리 한계 설정

- 권리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 행사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초·중등 교육법」의 권리 보장 조항에 함께 규정함.
- 권리의 보장과 책임 내지 의무가 쌍무적 관계임을 교육현장에서 강조하여야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됨.

5) 법령·조례·학칙의 관계 체계화

-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법령, 조례, 학칙, 학교생활규정간의 관계를 체계화함.
 - 법령: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보장, 절차의 적정성 보장, 법적 근거 마련
 - 조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학생의 권리 보장 또는 학칙에 위임
 - 학칙: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학교생활규정: 세부적인 구현 지침

3. 법령 개정방안

1) 체벌의 제한

- 학생 체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와 직접적인 체벌의 금지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제1항 단서

- (제1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
- (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2)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보장 규정

-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언론, 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 복장, 휴대폰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개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권리 보장 한계 규정

- 학교에서 학생 권리를 신장하되 그 한계에 관하여도 정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함.
- 학생의 권리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학교의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18조의4에서 정한 일반적인 인권 보장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학교사명과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는 시행령과, 시·도 별로, 학교별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신설)

-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4) 학생 징계의 종류 추가 및 적법절차 보장

- 특별교육이수와 퇴학 사이에 적정한 중간 징계의 종류가 없으므로 학생의 이익을 위하여 출석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3의2호(신설)

- 3의2. 출석 정지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출석정지’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출석정지나 전학이 징계 행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참고] 미국에서 정학(suspension)은 보통 단기간의 등교정지(5-10일 정도이며 5일까지는 학교장이, 그 이상은 교육감이 결정하기도 함)이고, 퇴학(expulsion)은 잔여 학기 또는 잔여 학년도에 걸친 정학을 가리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학 사유는 모호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만, 징계 사유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학칙에 일정 부분을 위임할 수밖에 없음.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개정)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가벼운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징계를 대신하여 불이익이 약한 지도 수단으로서 징계 성격의 전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신설)(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를 설정하여 징계시 적법절차에 대한 취지를 강조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개정)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대안 지도 수단의 근거 마련 및 적법절차 적용

- 교원의 학생 지도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징계보다는 우선적으로 학생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대안적인 지도 수단(progressive discipline)을 선택하도록 함.
 - 행위의 경중에 비례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신설)

-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교원의 학생 지도 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학업 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을 열거함(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방법은 학교장이 행하도록 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신설)

- 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학급교체

8.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6)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개정), 제4항(신설)

-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학부모의 참여 유도 및 책임 부여

- 특별교육이수는 일종의 개선 프로그램이므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함.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위의 징계 종류를 선택하게 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개정)

- 3. 특별교육이수(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미국 Indiana 주 MCCSC에서는 퇴학의 대안으로서 특별교육이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학부모가 특별교육이수의 기간, 내용 등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학 처리하도

록 함.

-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려서 공동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함.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신설) 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학생 권리 신장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과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례 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조례가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서 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제도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모순·상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대법원에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교원양성교육을 포함한 교직원 및 학생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
-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래의 건전한 시민을 기르는 학교의 역할에 충실한 학생생활규정이 되도록 유도함.
- 시·도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과 학생의 인권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학교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획일적인 규제를 자제함.

- 교육감이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지역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의 권리와 책임 의식이 길러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학생 자치 법정, 그린 마일리지 방안 등)을 개발·제시하도록 함.

5. 관련 법령 개정안 대비표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u>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u>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u>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u>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u>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의5(학생의 권리의 한계) ①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4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u>학생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u>
<신설>	제18조의6(학생의 지도) ① 교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징계 이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u>지도할 수 있다.</u> 이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

	<p>은 지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지도 방법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한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삭제 <2005.1.29></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 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 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 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p> <p><신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포함한 학생생활지 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삭제 <2005.1.29></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 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 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 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p> <p>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보호자의 동의와 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출석 정지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경한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

<p>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p>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5(학생의 지도)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안) 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p> <p>(제2안)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에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학급교체 8.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 중 학급교체 등 일부 지도 방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p>
---	---